

제2829호
2021. 5. 20.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 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1-388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 고 시

제2021-67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4

제2021-68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5

제2021-69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6

● 공 고

제2021-363호: 화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재열람 공고 8

제2021-387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10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388호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
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위임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중구 지방공무원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신설(안 제36조)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 신설로 실적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자치법규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3396-4512, FAX:3396-8603, 메일:myonga798@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실적가산점) ① 구청장은 직무수행 중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반기별로 그 성과에 따라 점수(이하 “실적가점”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실적가점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실적가점 부여 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 신 설 >	<u>제36조(실적가산점) ① 구청장은 직무수행 중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반기별로 그 성과에 따라 점수(이하 “실적가점”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실적가점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u> <u>② 실적가점 부여 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u>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67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가길 14-3	2021.5.20	건물 철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길 65-14	2021.5.20	건물 철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68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06-2 외 2필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길 65-14	2021. 5. 20.	퇴계로8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6. 30.	퇴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21-69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 제2014-119호(2014.3.27.) 및 제2019-185호(2019.6.7.)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111호(2017.11.1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제2021-52호(2021.4.28.)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동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7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2 일대 / 5,621.5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 행 자 : 우리자산신탁(주) 대표 이창하, 이창재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0. 10. 21.
5.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사항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층수 (지상/지하)	용 도
4,327.15	2,297.73	53.10	62,051.51	906.92	20/8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 급 계 획	공 대 상	건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대 지 면 적	건 축 연면적	대 지 면 적	건 축 연면적	대 지 면 적	건 축 연면적
계		1,404.88	20,146.01	2,488.19	35,680.76	434.08	6,224.74
토지등 소유자		-	-	-	-	434.08	6,224.74
일 반 공 급		1,404.88	20,146.01	2,488.19	35,680.76	-	-

-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신 설				용도폐지			
종류	규 모 (㎡)	설치비용 (원)	관리청	종류	규 모 (㎡)	국·공유지 (㎡)	무상양여 (㎡)
녹지	1,294.42	22,470,730,000	서울시 중구청	도로	741.4	741.4	623.30

-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가액

평가액 또는 추산액	시 행 전			시 행 후		
	계	토 지	건 축 물	계	대 지	건 축 물
	78,916,419,190	77,069,584,825	1,846,834,365	338,469,500,000	161,957,655,750	176,511,844,250

6. 관계서류 :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3)에 비치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1-363호

회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재열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32호(2002.06.21)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93호(2009. 7. 23)로 변경 결정 고시된 우리구 회현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재정비 계획(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재열람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열람기간 : 신문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본관6층 도심재생과(☎ 02-3396-5786)

다. 열람내용 : 회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회현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구 남창동 187, 회현동1가 194일대	38,600	-	38,600	서고 제79호 (1998.3.18)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 : 변경(계재생략)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안)

가) 획지 및 대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 : 변경(계재생략)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 : 변경(계재생략)

○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

○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안) 조서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 : 변경(계재생략)

나)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 : 변경(계재생략)

다)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안) 조서 : 변경(계재생략)

라. 변경사유

- 대상지역은 대부분 남산자락에 위치하여 남산 고도지구내 편입되어 건축규제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금회 고도지구내 건축규제완화 방안 마련과 남산을 연계하는 현실성 있는 지역특화가로 구상 등을 통해 지역의 상업, 주거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민간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함

마.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끝.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387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취소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사항	담당부서	비 고
에코이앤오(주) 박**)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5, 6층 (서소문동, 서소문화빌딩)	수질-16	등록취소	환경과 (02-3396-5615)	자진반납

1. 공고기간 : 2021. 5. 19. ~ 2021. 6. 2. 까지
2. 공고방법 : 우리구 홈페이지 전자공시 및 구보게재. 끝.

2021. 5. 18.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